

# 1년만에 SOC 국비 반토막

〈사회간접자본〉

올해 도에 편성된 정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전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의 SOC 분야 예산 감축 기조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규모 사업 종료까지 맞물리면서 도내 건설업계는 역대 최악의 불경기를 내다보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확보한 정부 SOC 예산은 총 9,501억원에 그쳤다. 2016년 3조2,633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1조9,319억원으로 40.8%가량 줄었다. 이어 불과한 해 사이에 감소 폭이 50.8%까지 확대되며 올해 1조원대 밑으로 주저앉았다.

이처럼 건설투자 위축이 예상되며 생존권 확보가 불투명해진 건설업 종사자들은 점차 일터를 떠나고 있

## 올림픽 관련 사업 마무리 영향 전년 49.2% 수준 9천억 불과 건설업 역대 최악 불경기 우려 정부·지자체 차원 대책 절실

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건설업 취업자는 5만2,000명이다.

올해 1월(5만4,000명) 대비 2,000여명이 감소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형 사업이 마무리된 점도 예산 감축을 심화시켰다. 각각 3조9,333억원, 2조4,084억원이 투입된 서울~강릉 간 KTX,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사업 등은 지난해 모든 공사를 마쳤다.

건설경기를 이끌 국책사업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도내에 추진될 국책사업은 국도·국지도(3,799억원), 철도(3,508억원), 항만(2,194억원) 등이 예정됐지만 고속도로 신설 관련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부족 현상이 찾아오면 지역 건설업계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이 우려되는 만큼 신규 국책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2021년까지 SOC 예산을 매년 연평균 7.5%씩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현기자 jjong@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지급, 제도 손질 필요”

# 감사원 지적... 귀막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 외면

감사원의 불공정행위 지적과 제도개선 주문에 기획재정부가 ‘마이동풍(馬耳東風)’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기연장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사원이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한 기준 기준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일선 발주기관에 하달했다.

27일 <건설경제>가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앞서 22일 감사보고서(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과 총사업비 협의조정 신청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주문

감사발표 이후 예산지침 확정

총사업비 조정시기 앞당기고

완공 연도에는 변경도 ‘불허’

불공정행위 지적, 되레 강화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완공일 전년도 5월 말까지, 단 1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총사업비 관리지침)으로는 공기연장비용을 집행하기 어렵고 국가계약법령과도 부합하지 않아 건설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간접비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비효율과 발주기관의 공사관리 소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기연장비용 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는 등 공기연장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발표나흘 후인 26일, 기재부는 각 발주처에 보낸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5월25일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하라고 명시했다. 5월 말까지 단 1회로 제한한 규정을 개선하라는 주문을 묵살했고, 되레 신청시기를 더 앞당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을 불허한다고도 못을 박았다. 5월25일 이후에는 조정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에 감사원 지적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자, 최근에야 통보를 받아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도, 일단은 5월 말 예산요구서 접수 및 8월 말 정부안 확정 등 예산안 편성 일정을 감안해 종전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기자 skbong@ ▶2면에 계속

## 公共공사 예정가격 소폭 오른다

조달청, 간접노무비·기타경비

공사원가 산정기준 상향조정

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 예정가격이 소폭 오른다.

조달청은 27일 정부발주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때 적용하는 ‘공사원가 계산 제비용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발주 공사별 공사금액이 전년보다 토목공사는 약 2.6%, 건축공사는 0.7%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6면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 발주공사에 바로 적용되며, 이를 준용하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공사원가 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간접노무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해 종사하는 근로자인 견비를 말한다. 기타경비는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해 산출되는 비목 이외 복리후생비 등을 가리킨다.

조정된 내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 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건축공사는 0.6%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고,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 “일반관리비 상향 없인 적정공사비 보장 한계”

**뉴스포커스** 조달청,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소폭 높여

조달청이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관련해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어느 정도 반영한 데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같이 환영을 나타내면서도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상승 폭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또 일반관리비 등은 종전 그대로 적용돼 적정공사비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건축공사는 0.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기타 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고,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달청은 신규 시설공사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율, 이윤, 기타경비 등이 제시돼 있다. 조달청이 분석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5개 항목과 관련법령 및 고시로 이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발주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때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공사비 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총사업비 실시계획 검토, 민간투자사업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이 이같이 상향 조정된 것은 '조

토목 간접노무비율 전년대비 1.3%p 건축 0.6%p 상승... 기타경비율도 '↑' 일반관리비율·이윤 기준은 그대로 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달청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에 따라, 합리적 조달가격 결정을 위해 공사원가 제비율 검토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에서 그동안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열린 조달청장-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에 나섰다.

조달청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된 것은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중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조달청이 시장의 여러가지 지표를 분석해 자체적으로 적용하지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계약예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율이 상향 조정됐지만 그 폭이 시장가격을 반영하기에는 소폭"이라며

2018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8.3.2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단위:%)

공사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직노) × 율			기타경비 (재+노) × 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2.6	11.3	12.6	7.9	7.0	7.9
	7~12개월 (365일)	12.8	11.5	12.8	8.2	7.3	8.2
	13~36개월 (1095일)	12.8	11.4	12.8	9.0	8.1	9.0
	37개월이상 (1096일)	12.7	11.4	12.7	9.1	8.2	9.1
5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2.6	11.2	12.6	8.9	8.0	8.9
	7~12개월 (365일)	12.8	11.4	12.8	9.2	8.3	9.2
	13~36개월 (1095일)	12.7	11.4	12.7	10.0	9.1	10.0
	37개월이상 (1096일)	12.7	11.4	12.7	10.1	9.2	10.1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2.4	11.1	12.4	8.1	7.2	8.1
	7~12개월 (365일)	12.6	11.3	12.6	8.4	7.5	8.4
	13~36개월 (1095일)	12.6	11.3	12.6	9.2	8.3	9.2
	37개월이상 (1096일)	12.5	11.2	12.5	9.3	8.4	9.3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1.7	10.4	11.7	7.5	6.6	7.5
	7~12개월 (365일)	11.9	10.6	11.9	7.8	6.9	7.8
	13~36개월 (1095일)	11.9	10.6	11.9	8.6	7.7	8.6
	37개월이상 (1096일)	11.9	10.5	11.9	8.7	7.8	8.7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8.3.2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단위:%)

공사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직노) × 율		기타경비 (재+노) × 율	
		건축	산업설비(건축)	건축	산업설비(건축)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7.9	7.9	5.5	5.5
	7~12개월 (365일)	7.9	7.9	5.6	5.6
	13~36개월 (1095일)	7.7	7.7	6.6	6.6
	36개월초과 (1096일)	7.6	7.6	7.1	7.1
50억 이상~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7.6	7.6	6.7	6.7
	7~12개월 (365일)	7.5	7.5	6.8	6.8
	13~36개월 (1095일)	7.3	7.3	7.8	7.8
	36개월초과 (1096일)	7.2	7.2	8.3	8.3
300억 이상~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7.5	7.5	6.8	6.8
	7~12개월 (365일)	7.4	7.4	6.9	6.9
	13~36개월 (1095일)	7.2	7.2	7.9	7.9
	36개월초과 (1096일)	7.2	7.2	8.4	8.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8.0	8.0	6.4	6.4
	7~12개월 (365일)	8.0	8.0	6.6	6.6
	13~36개월 (1095일)	7.8	7.8	7.6	7.6
	36개월초과 (1096일)	7.7	7.7	8.0	8.0

\*공사규모=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특히 물가상승, 공사기간 연장, 여러가지 규제 증가 등 영향으로 일반관리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변화된 건설산업 환경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시장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반

관리비율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공사특성·공종·규모에 따라 이를 넘기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 건설공제조합, 제112회 정기총회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300억원 출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오는 6월 말 공식 출범 예정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300억원을 출자한다.

건설공제조합은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2회 정기총회(사진)를 열고 2017사업연도 결산안 등을 의결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2017사업연도 결산 결과, 역대 최대인 20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당기순이익의 58.4%인 1169억원(1좌당 3만원)을 현금배당으로 조합원에게 환원키로 의결했다.

조합은 또 정부의 해외건설 활성화 정책에 협조하고, 조합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KIND에 30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주



가 출자는 없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아울러 이번 출자를 위한 근거를 담은 정관도 함께 개정했다.

2018사업연도 예산안은 대의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전면 재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임기 만료된 운영위원 4인과 보궐위원 1인은 운영위원장에게 선임을 위임키로 했다. 이 밖에

예·결산 총회 분리 개최와 전무 이사의 내부 승진(전·현직 임원 대상) 원칙도 함께 의결했다.

조합은 올해도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및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보증·공제사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현재 조합 총수익의 45% 수준인 보증수수료를 더 낮추고, 보증한도 상한을 높이는 등 조합원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경영성

과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새 정부 들어 주택규제 강화,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조합도 조합원사의 경영활동 지원에 적극 앞장서달라"며 "부단한 경영 혁신으로 미래 지향적인 건설전문 보증기관을 넘어 금융기관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kth@